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2,140,014	14,464,200
일반회계	439,784,042	13,193,521
특별회계	42,355,972	1,270,679
공기업특별회계	25,109,251	753,2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161,374	484,8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47,877	268,436
기타특별회계	17,246,721	517,4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59,287	58,77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12,973	15,38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31,787	57,95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79,839	29,39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818,015	54,54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366,819	101,00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17,410	81,522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23,131	6,69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4,944	10,648
도시개발특별회계	1,700,000	5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441,852	13,25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0,664	7,22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1,000,000	30,000

제 2 조 2013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57,53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 제47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1.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일반운영비 3.여비 4.자산및물품취득비 5.재해대책및복구경비